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송아량 의원 외 13명

나. 의안번호 : 제1931호

다. 제출일자 : 2020. 10. 16.

라. 회부일자 : 2020. 10. 26.

2. 주 문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질서문란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운영하여 철도안전법 등 관련 근거에 따라 무질서 행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관련 성범죄 등은 해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지하철보안관에게는 실질적인 사

법경찰권이 없어 범죄 발생시 현장검거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할 것임. 경찰에 신고하는 수동적인 대처만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자체적인 사법경찰권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하철보안관 및 도시철도 운영인력 등에 사법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임

3. 제안이유

- 서울 지하철은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지만 성범죄·폭행·노숙인 난동 등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와 질서문란 행위들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서울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총 275명이 근무 중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지하철 내 물품판매, 불법전단지 배포 등 무질서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특히, 해마다 성범죄, 절도 등의 범죄는 2천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법경찰권이 없는 지하철보안관으로 각종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철 탑승객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이 매우 중요한 업무이지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최근에는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한 폭행사건도 발행하고 있음
-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국가직공무원의 신분으로 사법경찰권을 통해 철도범죄 예방과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서울 도시철도를 관리하는 지하철보안관 등에 사법경찰권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각종 질서문란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지하철 보안관 등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원안 동의
- 지하철보안관과 도시철도 운영기관 임직원 및 관련 직원에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법률 개정 건의 취지에 동의함
- 매년 증가하는 지하철 내 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해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지하철보안관을 운영 중이나, 사법경찰권이 없어 단속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음
 - 지하철보안관에 사법경찰권이 없어 경찰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함
- 반면, 광역철도의 경우 국가공무원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지하철 범죄예방 및 단속업무를 전담, 일원화된 조직과 사법경찰권으로 효과적인 치안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 및 운영기관 임직원(지하철보안관, 역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음

- 정부* 건의 5회('11. 7. / '12.6. / '15.5. / '16.2. / '20.9.18)

-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시 건의('20.9.27)

5.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나. 정 부 : 국토교통부, 법무부

6.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건의안은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질서문란 행위 등을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보안관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리 인력에 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연간 평균 약 2천 건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범죄의 종류도 성범죄, 절도, 폭력 등 다양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성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지하철 내 유형별 범죄 발생 현황〉¹⁾

(단위 : 건)

연도별	계	절도		성범죄		폭력(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6,112	1,738	28.4%	2,295	37.6%	2,079	34%
2020년 9월말	1,730	545	31.5%	519	30%	666	38.5%
2019년	2,252	625	27.8%	882	39.2%	745	33%
2018년	2,130	568	26.6%	894	42%	668	31.4%

1) 서울지방경찰청(지하철 경찰대) 협조자료 _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운영처(20.10.31)

※기타 : 점유이탈물 횡령, 장물취득 판매 등

- 이 밖에도 지하철 무질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20년도 무질서 행위 단속현황²⁾을 보면 기타 무질서 행위가 67,277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미착용 관련 민원이 44,000건으로 급증한 결과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제도 및 질서유지 방안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이에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에 질서유지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지하철 보안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역사 및 전동차 순회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안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년 9월 기준으로 질서유지반 232명, 상가기동반 43명 등 총 275명을 운영 중에 있음
- 하지만, 지하철 보안관은 사법경찰관의 부재로 인해 범죄 발생시 용의자를 검거하는 등의 현장조치에 한계가 있고 법적 구속력을 동반한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못해 범죄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워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미착용 폭력 사건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면에 광역철도인 코레일의 경우 「형사소송법」³⁾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⁴⁾에 따라

2) '20년도 무질서 단속현황' 총 101,642건 _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 자료(10.31 기준)
 - 이동상인(9,800) 구걸(2,020) 종교연설(664) 불법광고(2,760) 취객(13,048) 노숙(6,073) 기타(67,277)
 - 기타 67,277건 중, 마스크 미착용 민원이 44,000건으로 65%를 차지함

3)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사법권을 부여 받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⁵⁾가 철도지역 및 열차 내의 범죄예방과 단속, 철도사고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만 사법권을 가진 범죄 단속 인력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지하철 보안관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임원 등에 사법권을 부여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시비에 따른 폭력 사건들에 대한 대응은 물론 실질적인 지하철 범죄 단속 및 질서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의 개정을 관련 기관에 촉구하는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1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둔다.